소식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6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일부 개정고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호, 2018.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을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가검사””를 ““자가품질검사””로, “한다)가”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로, “축산물가공품이”를 “축산물가공품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가검사자””를 ““자가품질검사자””로, “등이”를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로, “자가검사를”을 “자가품질검사를”로 한다.

제3조 중 “축산물가공품을”을 “축산물가공품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가검사 기준 및 방법)”을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가검사”를 “자가품질검사”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검사”를 “자가품질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는 영업자가 수집하는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축산물가공품 검사 항목)”을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은 별표 1과”를 “축산물가공품 및 식용란의 검사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축산물가공품 검사 주기)”를 “(자가품질검사 주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가검사자의 자격ㆍ임무 등)”을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ㆍ임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검사자의”를 각각 “자가품질검사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을 “작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작업장시설의”를 “작업장 또는 영업장시설의”로 한다.

소식

제8조제1항 중 “등은 자가검사”를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로 한다.

별표 1 중 4-2. 소시지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소시지 중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식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7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 체계를 운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일반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

1) 일반분야의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객석 종사자의 소비자 응대 방법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공통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3)-2)

1) 공통분야의 가점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4 항목(종사자 복지 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및 개인물품 보관시설 구비 여부)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176호, 2018. 4. 24 (2018. 4. 24. ~ 2018. 5. 1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18-1224호, 2018. 4. 18.)

소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9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확인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라 시험방법을 고시함으로써 원재료의 진위 확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 규정

1)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를 백수오, 한속단으로 규정함

나. 시험방법 규정

1) 원재료의 진위 및 다른 원재료의 혼입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제2018-26호 (2018. 1. 24. ~ 2018. 2. 13.)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 632회 예비심사(제2018-229호, 2018. 6. 15. 비중요 규제)

소식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축 ·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중 일부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17.12.15.개정) 중 일부 동물용의약품의 시행시기를 조절하여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3 중 (9) 델타메트린, (18) 디캄바, (29) 디플루벤주론,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8) 캡탄, (119) 퀴잘로포프에틸,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62) 페니트로티온, (164) 펜발러레이트,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6) 스피노사드,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5) 파목사돈, (259) 피리메타닐, (290) 인독사카브, (291) 족사마이드, (299) 티플루자마이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5) 페나미돈,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403) 메타플루미존,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2) 아이소페타미드,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60) 피카뷰트라족스, (468) 티아페나실, (470) 비사이클로피론]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75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19) 세프티오퍼, (194) 플루랄라너]

소식

1) 「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플루랄라너 등 2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축 ·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5 중 (3) 다이아지논, (72) 비펜트린]
1) 축 ·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중 비펜트린 등 2종의 적용대상 확대
2) 적용대상의 확대를 통한 합리적인 기준 · 규격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제고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제7. 7. 7.1.4.213, 제7. 8.3.120]
1) 기준 신설, 국내외 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식품 중 신설되는 농약 비사이클로피론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신설되는 동물용의약품 플루랄라너 시험법 신설
4)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 및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일부개정고시 부칙 개정[고시 제2017-102호 부칙]
1) 식약처 고시 제2017-102호(2017.12.15)에 따라 신설된 프로폭서 등 2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추가
2)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시행시기 개정에 따라 생산자의 사용 및 식품안전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40호, 2018. 6. 5.(2018. 6. 5.~2018. 6. 25.)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8. 5. 16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8. 5. 1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1598호, 2018. 6. 1)

소식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51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산란계 농장에서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에 대한 사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통단계(식육포장처리장 · 식육판매장)에서의 수거 · 검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장에서의 농약 등에 대한 출하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2)

1) 가금류 농장에서 출하 전에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 등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근육, 내장, 지방 등을 채취 · 검사할 수 있도록 함

2) 의뢰검사 시 신뢰성 확보 및 시료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농장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제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유통단계 수거 · 검사 결과 식육 또는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 ·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8-201호 (2018. 5. 10. ~ 2018. 5. 31.)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 폐지 없음

소식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합성향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허용물질 목록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향료 물질 20종 삭제 등 허용물질 목록을 정비하고, 총칙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향료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향료 물질 28종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식품첨가물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공유지 등 제조 시 경화공정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촉매제 1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국제조화 등을 위해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기준 설정 등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13품목의 사용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니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필요

2) "니켈"을 가공유지의 경화공정 중 촉매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II. 4. 가., 5. 가. 니켈)

3) 식품 제조 효율성 향상

나. 총칙 일부 조항 삭제 및 "합성향료"의 허용물질 목록 개정

1) 합성향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향료 물질 목록 중심의 관리 필요

2) 총칙 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향료 물질의 인정 조항 삭제(I. 3. 3))

3) "합성향료" 허용물질 60종 정비 및 28종 추가 지정(II. 가. 합성향료 C006, C015, D106, D110, D145, D153, D210, D250, E002, E106, E175, F033, F036, H067, H073, H100, I020, M009, M014, M020, M098, M135, M155, M192, M205, M255, M256, M375, M402, M411, M436, N037, P145, P166, P185, P201, R002, S014, T025, T066, T069, U016, V018, V019, A073, E167, F011, H057, H058, H110, H125, H246, I069, I075, M165, M334, M381, P112, S012, T090, A118, B136, B137, B138, B139, B140, C096, C097, D274, D275, D276, D277, E222, E223, E224, E225, E226, H252, I172, M506, M507, M508, N065, O083, P228, P229, U022, Y001)

4)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국민 보건 향상

다.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 규정 개정 및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1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식품공전의 신설유형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및 국제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강화 필요

2)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 범위에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추가 및 이에 따른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의 사용기준 정비(II. 5. 다., II. 5. 가.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철, 5'-시티딜산, 5'-시티딜산이나트륨, 5'-아데닐산,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5'-우리딜산이나트륨)

소식

3)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5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설정에 따른 사용기준 개정(II. 5. 가.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4) “L-시스테인염산염”을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및 이에 따라 합성향료 목록에 등재(II. 가. 합성향료, II. 5. 가. L-시스테인염산염)

5)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국민 보건 향상 및 다양한 식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일반시험법 중 질소정량법 개정

1) 안전하고 현대화된 시험법으로 개선 필요

2) 일반시험법 중 질소정량법에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한 시험방법 신설(IV. 27. 다)

3) 시험분석 편의성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464호, 2017. 12. 26.(2017. 12. 26. ~ 2018. 2. 2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8. 4. 17.) : 원안의결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8. 1. 5.) : 심사대상

나) 자체 규제심사(2018. 5. 9.) : 원안의결

다)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2018. 5. 17.) : 의견없음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18. 6. 26.) : 비중요 규제

소식 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빵류에 도포 또는 충전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관련 규격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영 · 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 메틸수은 규격적용 대상 어류를 명확히 하며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를 포함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의 항목 명칭을 기재사항의 특성에 맞도록 개정하며, 신청인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등재하고, 일반원료로 전환된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준 · 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을 신설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제1. 4. 2), 제2. 3. 5) (1) ③, 별표 1, 별표 2]

1) 메틸수은 규격적용을 위한 해양어류의 분류 방법 개정

2) 식품원료 목록의 항목 명칭을 개정하고 식품원료의 품목명(7품목), 이명(1품목), 학명(2품목), 사용부위(4품목), 사용조건(2품목) 명확화 및 중복된 식품원료(1품목)를 통합하여 민원인이 식품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나. 해조류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제조 · 가공기준 신설[제2. 2. 24)]

1) 무기비소의 함량이 높은 해조류의 안전관리 필요

2) 톳과 모자반을 원료로 사용 시 무기비소 저감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 · 가공기준 신설

3) 식품의 제조 · 가공 중 무기비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다.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제2. 3. 5) (2) ④]

1) 무기비소 위해 우려가 큰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영 · 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무기비소에 민감도가 큰 영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3) 무기비소 오염도가 높은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무기 비소 기준 신설

4)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섭취 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라. 한시적 기준 · 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 신설 및 원료 추가[별표 3]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식품원료로 인정된 원료 중 일반 식품원료로 등재되는 원료는 [별표 3] "한시적 기준 · 규격에서 전환

소식

된 원료"의 목록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2) 한시적으로 인정된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별표 3] "한시적 기준 · 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식품원료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에서 일반 식품원료로 기 전환된 식용곤충 4종을 [별표 3] "한시적 기준 · 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하여 민원인이 보다 쉽게 식품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마. 미생물 규격이 적용되는 빵류의 크림 정의 신설 및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 개정[제4. 1. 5) (7), 제4. 1. 5) (8), 제4. 22. 22-2 5) (6)]

1) 빵류에 충전 또는 도포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생물 제어 공정이 있는 경우 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2)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고 가열에 의한 미생물 제어 공정이 있는 경우는 장염비브리오 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바. 미생물 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 등[제4. 15. 15-7 5) (8), 제5. 5]

1)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대장균 적용 대상 품목의 명확화

2) 식품접객업소의 접객용음용수에 식중독균 규격에 적용되는 대장균 시험법의 막여과법 추가

사.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제6. 1, 제6. 3. 1), 제6. 3. 5), 제6. 3. 10), 제6. 4. 2), 제6. 4. 4) (5) ①]

1)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 규격이 통합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체채취자의 범위 확대 필요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검체채취자를 추가

3) 식품 및 축산물 검체의 채취자 범위 명확화

아. 일반시험법 개정 등[제4. 1. 6) (6), 제4. 2. 2-3 6) (1), 제7. 4.1.2 가, 제7. 4.3, 제7. 4.4.1, 제7. 4.5.1 다, 제7. 4.6, 제7. 4.7.1 3), 제7. 4.7.2, 제7. 4.8.1 가, 제7. 4.11, 제7. 4.17, 제7. 4.18, 제7. 4.20, 제7. 4.21, 제7. 4.25, 제7. 4.26, 제7. 6.1.3, 제7. 6.6.4, 제7. 6.8.3, 제7. 6.10.2, 제7. 6.10.6, 제7. 9.1.5, 제7. 9.2.9, 제7. 10.1, 제7. 10.2]

1) 대장균, 대장균군 정성시험법 중 발효관 가스발생 여부 확인단계가 중복되어 있어 간소화하여 개선

2) 바실러스 세레우스, 크로노박터 분리배양 배지 추가

3)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독소확인시험, 크로노박터 시험법 중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추가

4) PCR 검출감도가 향상된 프라이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개정

5) 얼음류 대장균군 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개정

6)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증균배양 기간을 10일에서 2일로 단축

7) 미생물시험법 중 시험용액의 제조방법, 반응온도 등 문구 개정

8) 유음료가 가공유로 통합 개정, 알가열성형제품이 알가열제품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세균수, 대장균군의 최확수법 적용대상에 개정사항 반영

소식

9) 유전자변형식품 추가 승인 품목 시험법 신설
10) 과자류, 빙과의 개별 세균수 시험방법 중 중복 기재된 시험용액 제조법 문구 정비
11) 세균발육시험법 적용 대상을 장기보존식품 중 통·병조림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으로 명확화
12) 가공유의 무지유고형분 함량 시험시 당분함량을 제외하도록 개정
13) 농축우유의 유고형분에서 유당이 제외되지 않도록 당분 시험법 개정
14) 식품 중 무기비소 시험법 개정
15) 식품 중 아플라톡신(B1, B2, G1, G2),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푸모니신(B1, B2) 동시분석법 신설
16) 방사선 조사식품 확인시험의 용어 및 시험법 서술양식의 통일
17) 식염의 불용분 시험법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불용분 시험용액으로 시험하던 황산이온과 염산이온 시험용액 조제방법 개정
18) 사분 규격이 불용분과 통합 관리되어 삭제됨에 따라 사분 시험법 삭제
19) 시험법 오기 및 누락된 사항을 정정함으로써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20) 효소식품의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역가 계산법 개정

자.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전부개정사항 오기 정정 등[제2. 3. 5) (9), 제2. 3. 15), 제7. 6. 6.6.2]

1) 소브산 등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공전 중 첨가물 사용 기준 개정
2) 원유의 가수·가염 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 항목 정정
3) 위화물 시험법 중 식염 시험법 추가

차.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3 중 (99) 이사-디, (164) 펜발러레이트, (169) 펜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사-디 등 농약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473호, 2017. 12. 28.(2017. 12. 28. ~ 2018. 2. 26.)
나) 공고 제2018-139호, 2018. 4. 4.(2018. 4. 4. ~ 2018. 4. 24.)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8. 5. 24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18. 6. 18

소식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1차)2018. 3. 20, (2차)2018. 7. 12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1차)2017. 8. 18, (2차)2017. 11. 15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① 규제심사 비대상: 제2017-3493호(2017. 12. 7), 제2018-947호(2018. 4. 2)

② 규제심사 대상: 제2017-3492호(2017. 12. 21)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8. 4. 24.~2018. 4. 25,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 (2018. 4. 26.)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627회, 2018. 5. 8.~2018. 5. 11)

소식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6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2018년 8월 24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290호, 2018. 7. 6.(2018. 7. 6. ~ 2018. 7. 27.)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소식 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가정간편식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 제조 · 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특히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허용오차 규정이 있으나,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함

1) 「식품 · 의약품 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 · 검사기관 및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 · 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다.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영양성분값을 사전에 확인하여 표시하는 경우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190호, 2018. 5. 3.(2018. 5. 3. ~ 2018. 5. 30)

2) WTO/TBT 공지 : 2018. 5. 8. ~ 2018. 7. 7.

정리: 방우석(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